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운영에 따른 제2여객터미널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24명(6급 11명, 7급 13명), 김해공항 국제선 C구역 신규 운영에 따른 동식물 검역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및 고위험 해외 식물 병해충 대응 관련 검역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한시조직”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32”를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28”을 “6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08”을 “61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645”를 “2,674”로 하고, 일반직 계 “2,645”를 “2,67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00”을 “2,629”로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u>한시조직 및 한시정원</u> 제45조(한시정원) <u>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10장 <u>한시조직</u>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2</u>	<u>635</u>	+3
·	·	·	
·	·	·	
일반직 계	<u>628</u>	<u>631</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08</u>	<u>611</u>	+3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45</u>	<u>2,674</u>	+29
일반직 계	<u>2,645</u>	<u>2,674</u>	+29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00</u>	<u>2,629</u>	+29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7